

KB골프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 1) 골프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2) 골프용품판매점, 골프(연습)장 경영자 및 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3) 만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위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골프장에서 골프의 연습이나 시합 중 우연한 사고로 입게 되는 상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레저활동으로 골프를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한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 2)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소멸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골프중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골프시설 안에서 연습, 경기, 지도 중의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발생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안에서 연습, 경기, 지도 중에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및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골프배상책임손해	골프시설 안에서 연습, 경기, 지도 중에 피해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2만원을 공제합니다)
선택계약	홀인원비용	18홀이상 보유한 국내골프장에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인이상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라운딩하는 골프경기중에 홀인원을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보상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골프용품손해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 분실
-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마멸, 분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2) 골프배상책임손해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골프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홀인원비용의 경우

(직업으로 골프 경기나 지도를 하는 사람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 골프장 경영자 및 사용인이 해당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행했을 경우
- 피보험자가 깔때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 비용

다.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골프용품손해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용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3. 보험료 산출 예시

산출기준 : 보험기간 1년

보장구성	보장금액	보험료
골프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5천만원	54,100원
골프용품손해	200만원 한도	
골프배상책임손해(자기부담금 2만원)	1,000만원 한도	
홀인원비용	50만원 한도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7.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 및 보상과의 관계는?

A)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설정하며 계약상의 보상한도가 됩니다. 보험가액은 가입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말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시가로 결정하며, 법적인 보상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만일 작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만 보상받게 됩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이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란?

A) 자기부담금이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라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